농어업회의소법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52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강승규·고동진·강명구

박성민 · 송언석 · 구자근

김교흥 • 박형수 • 박덕흠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농림어업·농산어촌은 우리 사회의 식량안보와 생태적 균형,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림어업인의 정책결정 참여 통로는 미흡하여 현장 의견이 농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실행력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와 조직 구성, 회원 자격, 대의원 선출 방식, 업무 내용, 정치적 중립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농림어업·농산어 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 림어업·농산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 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10퍼센트 또는 1천명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10개 조합 또는 단체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도록 함(안 제7조).
- 다. 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농지·어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회원이 될 수있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등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

록 함(안 제11조).

- 라.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 마.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34조부터 제39조까지).
- 바.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공동으로 전국농어업회 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부터 제53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8 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71조).
- 자. 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

도록 함(안 제73조).

농어업회의소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림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 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2. "농어업회의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 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 ② 농어업회의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제4조(사업) 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 3. 농림어업 · 농산어촌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수집 및 제공
 - 4. 농림어업 · 농산어촌에 관한 조사 · 연구
 - 5. 농림어업 · 농산어촌에 관한 교육 · 훈련 및 홍보
 - 6. 농림어업 · 농산어촌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 단체와의 협력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대(附帶)되는 업무

제2장 기초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 제5조(설립목적)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의 농림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농림어업·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관할구역) ①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 다만,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같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 설립할 수 없다.

-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설립인가)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1항의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과 제11조제2항의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또는 1천명과제11조제2항의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10개 조합 또는 단체 이상의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에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역의 농어업회의소의 설 립 여건 등에 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행정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정관)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관할구역

- 4.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8. 회의에 관한 사항
- 9.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10.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11. 회비 ·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총회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설립등기 등)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명칭
 - 2. 관할구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설립인가 연월일
 -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해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대의원총회의 의결
 - 2. 파산
 -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절 회원

- 제11조(회원 등) ① 농림어업인은 그 농지, 사업장, 어장 또는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있다.
 - ②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 원이 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 5.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6.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자치구만 있는 광역시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시·행정시 또는 군에 속하는 법인
- 7.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또는 군에 속하는 단체로서, 해당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단체
- 제12조(회원가입)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③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른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

- 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3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 원 및 특별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한다.
- 제15조(탈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
 -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 3. 파산한 때
-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받아 제명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관에 규정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 및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대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7조(회원 대장)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특별회 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제2항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그 밖에 그 보호가 필요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기관

- 제18조(대의원총회)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 ④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 ⑤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대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된다.
- 제19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회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4.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 6. 대의원, 특별대의원 및 임원의 해임
 - 7. 해산

-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 제20조(대의원총회의 의사)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재 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대의원총회의 의사록) ①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22조(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의 정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여성인 대의원이 일반대의원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초농어업회의소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23조(대의원 등의 선거 등)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

- 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 ② 보궐선거는 대의원 또는 특별대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 ③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자격, 제1항에 따른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선거 및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4조(대의원 등의 해임) ①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재적정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대의원총회에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대의원총회의 해임의결은 해임된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25조(대의원 등의 임기) ①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법인 또는 단체 대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 또는 단체로서 특별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 또는 단체 대의원"이라 한다)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대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 3.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대의원의 대표자
- ③ 법인 또는 단체 대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 제27조(임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정수와 임 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 특별대의원 및 임원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면직된다.
- 제29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 1.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대의원, 특별대의원의 직에서 해임되 거나 임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 2. 법인 또는 단체대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②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재적정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대의원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있으며,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대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임원"으로 본다.
- 제3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관련

- 한 주요사항의 의결에 참여한다.
- ④ 감사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31조(이사회)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 ⑥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 제33조(사무국)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광역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 제34조(설립목적)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의 농림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운영 및 전국 농어업회의소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농림어업·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5조(관할구역)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이하 "시· 도"라 한다)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
- 제36조(설립인가) 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 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설립 절차와 정관 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 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 제37조(정관)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관할구역
 - 4.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7. 회의에 관한 사항
 - 8.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9.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10. 회비ㆍ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10호 및 제11

-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 제39조(해산) 광역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대의원총회의 의결
 - 2. 파산
 -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절 회원

- 제40조(회원 등) 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된다.
 - ②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1.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특정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할 수 없

는 조합

- 2.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밖 의 단체의 시·도 연합회
- 제41조(가입)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된다.
 - ②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제42조(회원 등의 권리)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43조(회비)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제40조제1항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그 소속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44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 회원 등의 의무, 탈퇴, 제명과 권리 제한 및 회원 대장에 관하여는 제14조(다만, 제2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3절 기관

제45조(대의원총회)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장 직무대행,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 의사, 대의원총회의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 제46조(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① 대의원은 각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정원과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정원과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대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 ③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의원이 대표하는 회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⑥ 대의원 등의 해임·임기, 법인 또는 단체대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47조(임원)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정수와 임 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당연 퇴임 등, 임원의 직무, 이사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사무국에 관하 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 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제4장 전국농어업회의소

제1절 설립

제49조(설립목적)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림어업인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농림어업·농산어촌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0조(설립) ①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공동으로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
 - ② 전국농어업회의소는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4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 제51조(정관)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5.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 6.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7. 회의에 관한 사항
 - 8.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9.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 10.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제2호·제6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2조(설립등기 규정의 준용)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 제53조(해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대의원총회의 의결
 - 2. 파산
 -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제2절 회원

- 제54조(회원 등) ①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 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 ②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4.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 제55조(회비)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제54조제1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 업회의소가 그 소속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6조(준용규정)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등의 가입, 권리, 의무, 탈퇴, 제명과 권리 제한, 회원 대장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다만,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본다.

제3절 기관

- 제57조(대의원총회)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장 직무대행,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총회 의사록,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58조(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① 대의원은 각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는 시·군·구의 경우 그 시·군·구의 농림어업인이 회원으로 있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대의원이 된다.
 - ②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정원과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대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의원이 대표하는 회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④ 대의원 등의 해임, 대의원 등의 임기, 법인 또는 단체대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 제59조(임원)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정수와 임 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당연퇴임 등, 임원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 제60조(이사회) 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전 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 제61조(사무처) ①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처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62조(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 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3조(사업계획과 예산) 농어업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대의원 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 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 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5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어업회의소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조치를 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 ③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제24조제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6조(전국농어업회의소의 지도·감독) 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 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 ②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7조(전국농어업회의소의 보고의무 등) 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8조(농어업회의소 실태조사결과 공표 및 국회보고)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가 아니면 "기초농어업회의 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0조(사용료와 수수료) 농어업회의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농산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 여야 한다.
 - ③ 농어업회의소는 제5조, 제34조, 제49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 제73조(정치적 중립) ① 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농어업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 2.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3.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 제74조(다른 법인 등의 단체와의 협력) 농어업회의소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단체,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5조(다른 법률의 준용) 농어업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 제76조(벌칙) 제17조제3항(제44조 및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농림어업인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제77조(과태료) ① 제6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어업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기초 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 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라 한다)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과 제38조에 준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이

법에 따른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설립등기일에 종전기초농어업회의소 및 종전광역농어업회의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한다.